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13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1.

발 의 자 : 김형동 · 이종배 · 김위상
조경태 · 윤상현 · 김소희
안철수 · 박상웅 · 박형수
박정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더라도 그 결과가 「피의사실공표」 우려 등으로 공개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, 재해조사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조사 참여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,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원인조사에 참여한 경우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

보하고자 함(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등).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④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원인조사 참여가 허용된 사람의 원인조사 참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 후단에 따라 원인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원인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의2(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)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에 참여한 경우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에 관한 보고서(이하 “재해조사보고서”라 한다)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가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

항은 제외하여야 한다.

1.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2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등”이라 한다)의 명칭 및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④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·제출, 공개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56조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

제17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56조제5항을 위반한 자

제175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56조제4항을 위반하여 원인조사 참여가 허용된 사람의 원인조사 참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6조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

시하는 원인조사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(중대재해 원인조사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 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 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제56조(중대재해 원인조사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고용노 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관계전 문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원인조사에 참여 하게 할 수 있다.
②·③ (생 략) <신 설>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 라 원인조사 참여가 허용된 사 람의 원인조사 참여를 거부하 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	⑤ 제1항 후단에 따라 원인조 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원인조 사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 니 된다.
④ (생 략) <신 설>	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 제56조의2(재해조사보고서의 공 개)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

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에 참여한 경우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에 관한 보고서(이하 “재해조사보고서”라 한다)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가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.

1.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2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등”이라 한다)의 명칭 및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

	<u>되는 사항</u> <u>④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·제출, 공개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</u>
제162조(비밀 유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62조(비밀 유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3의2. 제56조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</u>
4. ~ 13. (생략)	4. ~ 13. (현행과 같음)
제17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170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2의2. 제56조제5항을 위반한 자</u>
3. ~ 8. (생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
제175조(과태료) ① . ② (생략)	제175조(과태료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③ -----

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(생략) <u><신설></u> 2. ~ 4. (생략) ④ ~ ⑦ (생략)	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1의2. 제56조제4항을 위반하여</u> <u>원인조사 참여가 허용된 사람</u> <u>의 원인조사 참여를 거부하거</u> <u>나 방해한 자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---	---